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9. 4.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2.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
(95.9.4)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병하 문화
공보실장)

가. 제안이유

관광사업사무중 일부 업무(국내·외 여행업)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로 권한
한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제19조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의무
자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과징금납부통지
서에 의하여 통지(안 제2조)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안
제4조)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95.6.20.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
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사무중
국내·외 여행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제1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부과
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재정조례로 과징금 납부
의무자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이 생략된 것
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에는 별 문제
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 관광진흥법제19조제3항에 과징금의 징수
방법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조례 및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제27조제2항의
중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
니하므로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없
다고 사료되며,

○ 동 조례의 시행으로 징수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수입으로 귀속되며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김종열위원) :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중별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

○ 답변요지(조병하 문화공보실장) : 관광진
흥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의 별표1에 열
거되어 있음.

○ 질문요지(유남렬위원) : 우리구 관내 여
행업체 현황은?

○ 답변요지(조병하 문화공보실장) : 현재
국내여행업 13개소, 국외여행업 36개소
로 49개 업체가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1995년8월21일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정이유

관광사업사무중 일부 업무(국내, 외여행
업)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로 권한재
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골자

○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의

무자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안 제2조)

-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안 제4조)
-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안 제5조)

3. 제정 근거

- 관광진흥법(1994.12.22. 법률 제4796호) 제19조제3항, 제55조제2항
- 관광진흥법시행령(1995.3.6. 대통령령제14547호)제17조 및 제41조제1항제10호
- 지방자치법('95.1.5.법률제4877호)제15조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규칙제2700호)별표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납부통지)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납부연기)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구청장은 납부기

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5일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어내)에 10일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에 관제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처분대장) 구청장은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독촉장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199	년	월	일
납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과징금				
가산금				
계				
납부기한	199	년	월	일
납부장소	마포구공금수납대행점			
위의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압류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인)				
199				
년				
월				
일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마포구보관용)

발행번호	199	년	월	일
납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과징금				
가산금				
계				
납부기한	199	년	월	일
납부장소	마포구공금수납대행점			
위의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수납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199	년	월	일
납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과징금				
가산금				
계				
납부기한	199	년	월	일
납부장소	마포구공금수납대행점			
위의 같이 영수합니다.				
199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인)				